

제정 :2007.07.01

~

개정 :2021.10.2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

-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 ②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적용하고,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또는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 ②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하며 회사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sds.com)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이용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3. 이용고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4. 이용권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5. 단말기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측에 설치하여 회선에 접속하는 기기

6. 회선종단장치(Modem,DSU등):회선과 단말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회선과 단말기기간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7.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계 약

제 1 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이로써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보 및 치안,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등
- ③ 고객은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납입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승낙의 유보】

- ①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이용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허위로 제공,누락,또는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15조 ②항에 의해 서비스이용이 중단된 경우.단 서비스 이용중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임

3.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회사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신용정보기관 또는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7 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① 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2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사업자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은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제 3절 계약의 변경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 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2. 설치 장소

제 11 조 【설치장소 이전 등】

① 고객은 구내 또는 구외로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전신청에 대하여 제6조(승낙의 유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고객은 설치장소의 이전 없이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휴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이용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절 이용권승계

제 13 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회사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권의 승계】

- ①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 통지합니다.
-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5절 계약의 종료

제 15 조 【해약】

- ① 고객이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 또는 개통 후에 해약하려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가입요금 등 납입하여야 할 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타인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고객측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사유를 없애지 않은 경우
 5. 고객이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회사서비스별 약관 등을 위반하는 경우
 6. 고객이 일시이용중단기간 만료 후 재이용의사 표시 없이 장기간 연락 두절되는 경우
 7. 제25조 ①항 관련, 서비스제공중단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서비스제공중단을 당한 경우
 8.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 16 조 【의견진술】

- ① 회사는 제15조(해약)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다음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 조치 후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2. 해약예정일
3. 의견진술의 기한 및 장소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 17 조 【단말기기의 설치】

① 제5조(이용신청 및 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고객은 서비스 개통예정일 이전에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이하 “단말기기등”)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또는 임대하는 단말기기 등은 회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단말기기등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④ 단말기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고객의 주소, 사무소, 사업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 18 조 【사전점검】

① 회사는 서비스개통 이전 제17조(단말기기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점검을 수행하려는 관계직원은 고객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객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개통】

①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설비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설치공사가 끝나고 고객과 협의하여 개통일전에 확인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개통확인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날 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개시한 날을 개통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18조(사전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20 조 【개통 지연】

①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개통된 경우 회사는 개통후 고객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액요금을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26조(서비스제공휴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휴지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절 서비스의 이용

제 21 조 【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타인사용의 금지】

고객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회사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이용내역의 열람 등】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서비스에서 발신한 이용내역의 열람 및 복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6개월이 경과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제 3절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 등

제 24 조 【일시이용중단】

①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일시이용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계약휴지 처리하고, 고객의 재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 25 조 【서비스제공중단】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4호내지 7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단합니다.

1. 제9조(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요금납부 등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22조(타인사용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기타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때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워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7.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제공중단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단, ①항 4호내지 7호의 경우에는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서비스를 다시 제공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휴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절 유지보수 등

제 27 조 【유지보수】

- ① 고객이 설치한 설비의 유지보수는 고객이 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지보수를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용실태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의 구내에 설치한 회사설비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고객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확인결과 회사의 설비에 다른 전기통신 관련 기기 또는 불법 단말기 등을 연결하여 전기통신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증거보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고장신고 및 처리】

-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것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요금

제 1절 요금의 계산

제 30 조 【요금 등의 구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1 조 【과금주기의 산정】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 분, 시간,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연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용한 월수로 산정합니다.

제 32 조 【요금의 계산 등】

- ①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금자료가 24시간이상 계속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되어 요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월별 일평균액 중 최저액에 고장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하되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별약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이용요금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 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33 조 【요금납입책임자】

-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③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고객은 그 청구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 ① 회사는 납입청구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매월 청구되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계약휴지 및 서비스제공휴지 기간 또는 이용 제한기간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별 요금납입청구를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고객의 동의없이 당해 서비스의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을 합산 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기일】

① 회사는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37 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단,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납입방법】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회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납입 방법간의 변경은 변경신청일 익월 청구서부터 적용합니다.

② 요금납입시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로,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될 경우, 지면 청구나

이동전화의 SMS,이메일 등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잘못 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3절 체납요금 등

제 40 조 【체납요금의 징수】

- ①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지면 청구나 이동전화의 SMS,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 41 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침해사고 및 스팸 대응

제 42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 중단 또는 접속경로의 차단요구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해당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E-mail, fax, 전화, SMS, 팝업 등의 방법으로 중단사유, 발생일시, 중단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사정으로 유효한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사건의 긴박성,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된 때에 즉시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43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47 조의 4에 의거하여 해당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E-mail, fax, 전화, SMS, 팝업등의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장비의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5.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다른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수 있는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의 제거 및 IP 블록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 ISP 협회(KISPA)의 소정 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 48 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45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게시의 제한)

- ① 고객은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 ①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함합니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FAX, 전자우편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⑤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47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46 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6 장 고객보호

제 48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예정된 서비스의 중단인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상황, 이용자 또는 제3자의 파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
3.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나 이용자와 협의한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제3자에 의한 악의적인 대량의 웹 및 바이러스 발송으로 인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정상적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약 받는 경우
7. 제 4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보안정책신청서 또는 보안정책 변경신청서에 의해 고객이 요청한 보안정책에 의해 일어난 침해사고
 - 나. 보안서비스와 관련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해 고객이 임의변경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고객의 네트워크 보안 침해사고에 대하여 고객의 영업기회 손실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07.0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01.0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10.22부터 시행합니다.